

#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안녕하십니까? 새누리당 진두생 의원입니다.
  
- 본 의원이 발의한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  
-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 
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 제3항은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  
- 하지만 적정성 여부의 판단 결과 부적정한 경우에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2조와 상충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

□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재계약 심의에서 수탁기관이 부적정한 경우에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